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4서식] <신설 2023. 12. 18.>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지위승계 신고서**
 중점관리물질 신고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승계 사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신고번호			
신고사항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 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수수료 2,000원
담당자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기업은 1,000원, 소기업은 400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지위승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